

학생징계위원회 운영규정

전문제정 2019.05.22., 개정 2020.04.28., 개정 2022.02.18. 개정 2024.03.01.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혜전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학생징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기능)

- ① 학생으로서 제반 각종 생활규정을 지키지 않아 징계사유가 발생시 심의한다.
- ② 유기정학이상의 처벌과 해벌에 대해 심의한다.
- ③ 유기정학이상의 발생했을 시 위원장의 발의로 위원회에서 심의한다.

제3조 (구성)

- ① 위원장은 학생처장으로 한다. <개정 2022.02.18., 2024.03.01.>
- ② 위원은 학생팀장을 포함한 5인이상 9인 이내로 총장이 위촉한다.<개정 2020.04.28.>

제4조 (임기)

-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기타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.
- ② 위원이 궐위 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 (위원장 등의 직무)

-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임시위원장은 위원회의 호선으로 선출한다. <개정 2022.02.18.>

제6조 (회의 및 의사의결)

-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한다.
단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- ② 본 위원회에서 심의결과는 총장의 승인 후 결정한다.

제7조 (소위원회)

-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②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8조 (간사)

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, 학생팀 담당직원으로 한다.<개정 2020.04.28.>

제9조 (회의록작성)

- ① 회의록은 위원장의 지시로 간사가 작성한다.
- ②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, 장소, 발언요지,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한다.

부 칙(2019.05.22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9년 05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0.04.28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0년 04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02.18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년 0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4.03.01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